



영국 United Kingdom

사회주택법 개정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 확보 추진

이지원 |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2026년 6월 영국 정부는 사회주택법안(Social Housing Bill)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저렴한 주거 형태로, 장기적인 거주 안정성과 임대료 보조를 제공하며, 주로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 민간 주택시장에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6년 6월 의회 2차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과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 임대 형태로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집에 머물거나, 집을 떠나 노숙과 경제적 불안정의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지만을 남겨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면서도 기존 생활공간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보호받아야 할 생활 기반이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통제와 협박을 행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대체로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주거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가 된다.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순간 피해자는 직장,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와 돌봄 환경의 변화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녀의 생활 안정과 돌봄 연속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생계와 회복 기반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순히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주거 기반 전체를 다시 세우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영국 가정폭력 국가센터(National Centre for Domestic Violence)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이 생애 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여성은 4명 중 1명, 남성은 6~7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여성만이 경험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피해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은 반복적인 폭력, 신체적 위협, 성폭력, 살해 등 고위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학대적 관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전 파트너에 의한 심각한

참고자료


- GOV UK (2026.6.1.), "Domestic abusers to be evicted under new landmark housing law", <https://www.gov.uk/government/news/domestic-abusers-to-be-evicted-under-new-landmark-housing-law> (접속일: 2026.6.18.)
- GOV UK (2026.5.13.), "THE KING'S SPEECH 202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a18713db95db968c8f3bbfd/The_King_s_Speech_2026_-_background_briefing_notes.pdf (접속일: 2026.6.18.)
- National Centre for Domestic Violence (2026), "Domestic Abuse Statistics UK", <https://www.ncdv.org.uk/domestic-abuse-statistics-uk/> (접속일: 2026.6.18.)

폭행이나 살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정책은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면서도, 여성이 겪는 구조적 위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회주택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가정폭력 대응 조치가 포함된 것은 정부가 가정폭력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속시키는 조건 중 하나로 주거 불안정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사회주택 임대인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먼저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동임대의 경우 피해자가 임대계약 자체를 종료하지 않고서는 가해자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고, 이는 피해자를 노숙과 경제적 불안정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또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퇴거 통지를 제출해 공동임대계약을 종료시키고, 피해자가 집을 잃게 되는 허점도 존재했다. 결국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주거권이 오히려 가해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사회주택 임대인과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집을 떠나지 않아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사회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있게 된다. 공동임대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임대계약을 피해자 단독 명의로 이전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대체 주거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가해자가 제출한 퇴거 통지가 공동임대계약을 종료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도록 했다. 이는 가해자가 주거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집에서 내쫓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 이처럼 개정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지만, 적용 범위와 작동 조건은 제한적이다. 법안은 사회주택 공동임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나 가해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드러내고 임대인 또는 법원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보호 조치가 작동한다는 점도 한계다. 따라서 신고부터 법원 절차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와 함께, 보복 위험 평가와 대체 주거 제공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대응이 주거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은 신고, 처벌, 보호 조치만으로 보장되기 어렵고, 주거 안정, 생계 기반, 자녀 돌봄, 지역사회 지원망과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은 민간 주택시장에서 대체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폭력에서 벗어나거나 안전한 생활 기반을 회복하는 데 더 큰 제약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는 여성·가족, 형사사법, 복지, 주거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다분야 협력의 과제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대응을 위기 개입 이후의 생활 안정과 회복 기반까지 확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스페인 Spain

임신중지 권리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추진

곽서희 |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스페인 정부가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헌안은 임신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스페인 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6년 4월 초, 내각은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제43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추가하고자 하는 조항은 “공공기관은 여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등한 조건하에 임신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임신중지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법적 인정이며,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아나 레돈도 가르시아(Ana Redondo García) 평등부 장관(Minister of Equality)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안이 스페인 정부의 최고 법률 자문기관인 국무원(Consejo de Estado)의 검증을 거쳐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원은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 시행령, 행정조치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고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이다. 레돈도 장관은 임신중지권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본 존엄성 및 인격과 직결된 권리로 인정받았으나,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의 현재 임신중지법(Law 2/2010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Abortion)은 임신 14주 까지 본인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 단계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2010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미성년자의 접근권, 공공의료 제공기관의 역할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되어 왔다.


정부가 개헌을 서두르는 여러 배경 중 하나는 지역별로 극심한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다. 임신 중지는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으나,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시술을 수행하려는 의료진 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실에서 전체 임신중지 수술의 20%만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상당수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의료진은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의 의사가 임신중지 시술 수행을 거부하고 있어 외부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아나 레돈도 가르시아(Ana Redondo García) 평등부 장관은 헌법 수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하원 관보(Boletín Oficial de las Cortes Generales)의 공식 초안에 따르면 기존 헌법이 보건권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특정하여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5조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규정한 제10.1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참고자료

- Congreso de los Diputados (2026.4.13.),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102/000001: proyecto de reforma del artículo 43 de la Constitución Española,” https://www.congreso.es/public_oficiales/L15/CONG/BOCG/A/BOCG-15-A-92-1.PDF (접속일: 2026.6.16.)
- Euro Weekly News (2026.4.10.), “Spain could give abortion rights constitutional status under new proposal,” <https://euroweeklynews.com/2026/04/10/spain-could-give-abortion-rights-constitutional-status-under-new-proposal/> (접속일: 2026.6.16.)
- La Moncloa (2026.4.7.), “El Gobierno aprueba el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para blindar el derecho a l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26/070426-rueda-de-prensa-ministros.aspx> (접속일: 2026.6.16.)
- Ministerio de Sanidad. (2026, April 7), “El Gobierno da luz verde al proyecto de reforma para constitucionalizar la vertiente prestacional del derecho a l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https://www.sanidad.gob.es/gabinete/notasPrensa.do?id=6879> (접속일: 2026.6.16.)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에서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정당들은 이번 개헌이 기존의 임신중지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는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현재의 법적 체계만으로도 충분한데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비판자들은 특정한 정책 영역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법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026년 4월 30일, 하원은 보수 야당인 국민당(PP)과 복스(Vox)가 제출한 임신중지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수정안(Enmiendas a la totalidad)을 부결하고, 내각의 헌법 개정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각의 반대 움직임을 저지하고 입법 절차를 지속할 동력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개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스페인 헌법이 요구하는 특별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스페인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5(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177표, 반대 171표로 과반은 넘었지만 개헌에 필요한 210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보수 야당과의 협치 및 사회적 합의가 향후 입법 과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원 합동 위원회의 재조정 또는 하원 2/3 및 상원 과반수의 찬성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당(PP)은 이미 임신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하며 헌법개정안은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서 주목할 만 하다. 임신중지권을 일반 법적 조항을 넘어서 보다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로 보장하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개정안의 성패는 의회 내 정치적 협상과 표결 결과가 관건일 것이다.

• RTVE (2026, April 30), "El Congreso tumba las enmiendas a la totalidad de PP y Vox a la reforma constitucional para blindar el aborto," <https://www.rtve.es/noticias/20260430/congreso-tumba-enmiendas-a-totalidad-presentadas-por-pp-vox-a-reforma-constitucional-para-blindar-aborto/17048261.shtml> (접속일: 2026.6.16.)



호주 Australia

◦ 여성·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과 사회적 가치

조혜인 |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 YWCA 오스트레일리아와 Per Capita Centre for Equitable Housing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장기 사회주택(social housing) 및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사회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경제적 선택이기도 하다는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호주 전역에서 주택 위기가 심화되고, 여성 노숙이 증가하며, 보건·사법·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주거는 응급의료, 경찰, 위기숙소, 사법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줄여 공공 부문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치상으로는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gender-responsive)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한 주택에 정부의 예산 1달러가 투자될 경우, 정부는 최소 2.02달러의 측정 가능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택을 제공할 경우 경제적 편익은 더욱 커졌으며, 안정적인 주거가 가족 재결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 투입 대비 최대 4.66달러까지 사회·경제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해당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약 350만 호주달러(약 37.7억 원)의 의료비용과 280만 호주 달러(약 30.2억 원)의 사법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YWCA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미셸 필립스(Michelle Phillips)는 이번 연구가 사회주택과 부담가능한 주택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중 하나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성별에 따라 주거 불안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gender-neutral)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 이번 보고서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호주 주택시장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다양한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대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임대주택 위기(rental crisis)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에 임대 매물이 나오면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또한 한국의 전세 제도와 달리 호주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어, 대부분의 세입자는 높은 수준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년 10월 기준 시드니의 주당 중위 임대료는 807호주달러(약 86만 9천 원)로,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495호주달러(약 376만 원)에 달한다.


✍️ 이러한 상황은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며,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구의 경우 여성 가장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자료

- Forbes (2026), Average Rent in Australia: The Complete Guide. <https://www.forbes.com/advisor/au/property/average-rent-price-in-australia/> (접속일:2026.6.22.)
- Percapita (2026), Gender Responsive Housing. https://percapita.org.au/our_work/gender-responsive-housing/ (접속일: 2026.6.20.)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의 노숙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정폭력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 및 위기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호주 국가 주택 투자 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사회주택과 부담가능 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보고서가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세대 간 빈곤의 감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편익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사회·경제적 가치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복지 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서, 여성과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 가정폭력 예방, 노숙 감소, 가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주택정책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공공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스웨덴 Sweden

국가 성평등 전략과 성폭력·성매매 대응 방안

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스웨덴 정부는 2026년 4월 20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명예에 기반한 폭력과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10개년 국가 전략(2026-2035)을 제시했다. 니나 라르손(Nina Larsson) 성평등부 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 카밀라 발터손 그린발(Camilla Waltersson Grönvall) 사회서비스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Services), 그리고 야콥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복지보건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Affairs and Public Health)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비전 제로(Vision Zero)' 접근법을 지침으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사회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몇 년간 스웨덴 정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성폭력·성매매 대응 방안들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제시된 성평등 국가 전략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안전위원회(Council for Women's Safety)'를 신설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비전 제로' 접근법을 지침으로 삼는데, 이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업무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여성 대상 폭력의 사회적 용인 수치가 오직 0명이라는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은 폭력을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 및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로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비전 제로' 접근법하에서 정부는 과거의 파편화된 성평등 정책에서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10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5가지의 핵심 전략 분야는 폭력 예방 업무, 폭력 징후 감지, 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범죄 예방, 그리고 재범 방지 업무이다. 이러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3대 기본 전제로 인권 기반 개입 및 강화된 피해자 관점, 모든 폭력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협력, 그리고 지식 및 정보 기반의 업무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관 간 파편화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따라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을 컨트롤 타워로 각 공공 부처에 세분화된 책임이 부여되었다. 성평등청이 전략의 지침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 국립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사회서비스,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지방 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s), 국립 여성폭력 지식센터(National Centre for Knowledge on Men's Violence Against Women, NCK), 통계청 등에서 국가 전략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 이러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스웨덴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온 바 있다. 예컨대 정부는 2025년 9월 25일, 국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 목표로 '명예 관련 폭력 근절(honor-related violence)'을 법제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폭력이 여타 폭력의 형태와 달리 집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으며, 구체적인 해결 목표를 별도로 도입하고 관련 대응 업무의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연계하여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6년도 성평등 정책 내 새로운 이니셔티브(신규 사업)에 1억 6,600만 스웨덴 크로나(SEK, 한화 약 210억 원)를


참고자료

- Criminal Code (1962: 700),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brottsbalk-1962700_sfs-1962-700/#K6 (접속일: 2026.6.11.)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5.9.25.), "New seventh target to prevent and combat honor-related violence and oppressio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nytt-sjunde-delmal-for-attforebygga-och-motverkahedersrelaterat-vald-och-fortryck/> (접속일: 2026.6.11.)
-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2026.4.16.), "New Strategy to Strengthen Work Against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jamstalldhetsmyndigheten.se/en/news/new-strategy-to-strengthen-work-against-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6.11.)
- The Swedish Criminal Code,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7a2dcae0787e465e9a2431554b5eab03/the-swedish-criminal-code.pdf> (접속일: 2026.6.12.)

투자하였다. 이는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성평등 예산이었으며 이니셔티브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 명예 관련 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대응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성폭력·성매매 근절 대응 방식은 노르딕 모델(Nordic Model)로 대표되는 성 구매자 처벌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성매매 관련 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구조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만을 처벌하며, 성 판매자가 성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 일자리, 심리 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 스웨덴은 형법 제6장을 통해 성범죄 및 성착취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제11조(성적 행위의 구매)가 개정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 구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는 2022년 8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개정 전 법문의 처벌 대상이 성적 서비스 구매(purchase of sexual services)로 명시되었던 것이 성적 행위 구매(purchase of sexual act)로 개정되면서 물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신체 접촉 요건이 아닌 성적 행위 자체에 주목하여 온라인 상의 성매매를 오프라인 성매매와 동일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여성 폭력 근절과 관련한 최근 스웨덴 정부의 성평등 계획안은 정부 수준의 통합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계획안이 만들어진 나라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 가해 및 피해 양상, 식민지 및 전쟁하는 동안의 정부 개입의 역사,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스웨덴과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